회계감사기준

본과정의 소개

➢ 본 과정의 목적

2003년 개정된 외감법 제5조 2항의 의하여 2005년 3월 29일 새로이 제정된 회계감사기준의 이해를 목적으로 합니다.

➢ 본 과정의 결과

제정회계감사기준의 의의 및 제정회계감사기준의 주요내용에 대한 학습을 통해, 외부감사인으로서 외부감사수행시 따라야 할 절차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 본 과정의 목차

▪ 1주차

- Chapter 1 : 제정회계감사기준 개요, 100 총 칙
- Chapter 2 : 200 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 2주차

- Chapter 3 : 210 감사계약 ~ 260 내부감시관련 감사문제에 관한 내부감사기구와의 협의
- Chapter 4 : 300 감사계획 ~ 402 용역대행업체를 이용하는 회사를 감사할 때 고려사항

▪ 3주차

- Chapter 5 : 500 감사증거 ~ 530 표본감사와 기타의 추출방법에 대한 시사(Test)절차
- Chapter 6 : 540 회계추정치에 대한 감사 ~ 580 경영자 진술

▪ 4주차

- Chapter 7 : 600 타감사인의 감사결과 활용 ~ 700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Chapter 8 : 700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800 중소기업 재무제표 감사 특례

1주차

➢ **1주차의 학습목적은 …**

제정회계감사기준의 개정 취지 및 기준 “100 총칙”의 학습을 통하여 회계감사기준의 기본적인 원리의 전달 및 기준 “200 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범위”의 내용에 대한 전달입니다.

➢ **본 과정의 학습 후 …**

제정회계감사기준의 제정취지를 이해 할 수 있으며, 감사인의 회계감사의 목적 및 감사의 한계와 감사인이 준수하여야할 독립성기준에 대한 기준의 내용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 1주차 학습목표

1. 개정회계감사기준의 개정 의의 및 주요개정사항에 대하여 학습합니다.
2. 감사의 목적 및 고유한계에 대하여 학습합니다.
3. 감사인이 준수하여야 할 독립성에 대하여 학습합니다.

➢ **목차**

Ⅰ. 제정회계감사기준의 개요
Ⅱ. 회계감사기준 학습 : 100 총칙
Ⅲ. 학습문제
Ⅳ. 학습정리

1. 회계감사기준 제정취지

➢ 회계감사기준의 제정근거

회계감사기준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외감법"]이 규정한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회계감사기준]**
>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001. 3. 28 개정)
> ② 제1항의 회계감사기준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되,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3. 12. 11. 개정)

➢ 회계감사기준의 제정 목적

회계감사기준은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 수행시에 필요한 기본원리와 주요절차를 규정하고자 함이다.

2. 회계감사기준 제정방향

회계감사기준은 기업활동의 국제화에 추세에 따른 회계감사의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요구에 맞추기 위하여 국제감사기준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으로서의 법률적 요구사항 및 회계전문가로써의 전문가적 판단이라는 두가지 축의 균형을 바탕으로 제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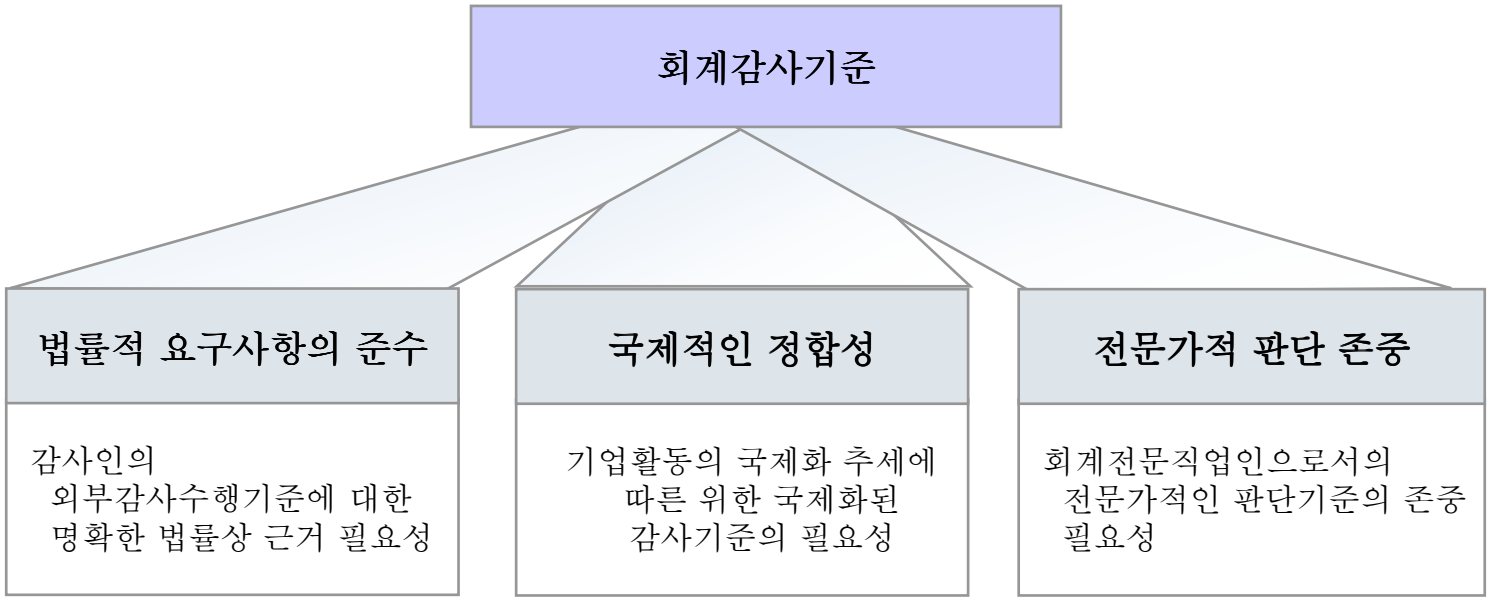

3. 회계감사기준 주요변동내역

제정된 회계감사기준은 현행 회계감사기준을 완전 폐지 후 현행 회계감사준칙 즉 국제회계감사기준(ISA, International Standards on Accounting)에서 '**기본원리와 주요절차**'를 새로운 회계감사기준으로 채택하였다.

➢ **회계감사기준의 제정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회계감사기준은 완전히 폐지하고 제정된 회계감사기준만을 사용한다.
- 회계감사기준의 제정기반으로 국제회계감사기준을 채택한다.
  즉, 현행 회계감사준칙의 굵은 글씨체로 표시된 ' 기본원리와 주요절차 '를 회계감사기준으로 채택한다.
- 외감법 등 국내법규에서 외부감사인에게 요구하는 사항[독립성 등]을 회계감사기준에 반영한다.
- 현행 회계감사준칙중 '기본원리와 주요절차'의 실무적용안내목적으로제정된 사항은 '회계감사기준 적용준칙'(가칭)으로 제정하기로 한다.

3. 회계감사기준 주요변동내역 ; 계속

➢ **회계감사기준의 주요변동내역**

구분	현행회계감사기준	제정된 회계감사기준	비고
제정기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제정방식	조문식	문단식, 코드식 (100,200,…,800)	
전문가적판단의 적용범위	감사인이 중요성과 위험도에 따라 합리적 판단에 따라 준수 [감사기준 2조]	현행기준과 유사한 내용이나, 보다 상세히 기술[총칙 100. 문단 6]	(*1)
하위규정	회계감사준칙	회계감사기준 적용준칙[가칭]	하위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함
용어의 규정	일부(3개)만을 규정[감사기준 4조]	필요 용어를 별표"용어의 해설"로 집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

3. 회계감사기준 주요변동내역 ; 계속

(*1) 전문가적 판단의 범위

현행 회계감사기준

회계감사기준 제2조 [회계감사기준의 준수]
감사인은 회계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의 중요성과 위험도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정된 회계감사기준

회계감사기준 100 총칙
6. (기준의 적용)
6. 1 감사인이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감사에 관련되는 사항의 중요성과 감사위험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야 한다.
6. 2 감사인이 직면하는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회계감사기준의 제정은 불가능하므로 이 기준은 사업무수행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원리로 사용되어야 한다.
6. 3 감사인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인 감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기준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인은 그 이유과 타당성을 조서화 하여야 한다.

3. 회계감사기준 주요변동내역 ; 계속

➢ 회계감사기준의 주요신설내역

구분	현행회계감사기준	제정된 회계감사기준	신설사유
신설된 규정	규정 없음	감사인이 준수하여야 할 독립성유지의 세부요건을 규정 [기준 200. 4 “감사업무에 있어서의 독립성”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독립성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함.
		비상장 중소기업의 적용 특례 [기준 800 중소기업 재무제표 감사의 특례]	중소기업의 기업환경을 반영하여 감사기준의 적절한 변경필요성을 반영함.
		문서보존방식의 개선 [기준 230 문서화]	현재의 정보통신기술을 반영한 문서보존 방식(광매체를 이용한 보존)을 허용함.
		피감사별 감사투입시간 기록의 문서화	감사품질의 직·간접적인 개선을 위한 감사 투입시관리의 표준안 마련필요성을 반영함.

100 총칙

1. 목 적

회계감사의 목적과 감사의 고유한계 및 회계감사기준의 기초와 적용방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2. 주요기준해설: 감사의 목적, 고유한계, 감사인의 책임, 감사기준의 적용

➢ **감사의 목적 [기준 100. 3]**

감사는 감사대상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회사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 주주,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자

100 총칙

2. 주요기준해설; 계속

➢ **감사의 고유한계 [기준 100. 4]**

▪ 감사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은 회사의 재무상태 또는 경영성과의 양호 여부를 평가하거나 장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은 합리적인 확신에 기초하므로 감사안은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주요한 왜곡표시가 감사과정에서 적발될 것임을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정이나 오류가 사후적으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다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지 못함.
(2)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업무의 수행 및 판단에 있어서의 부적절성
(3) 전문가로서의 적격성이나 정당한 주의의무의 결여
(4) 감사기준의 미준수

100 총칙

2. 주요기준해설; 계속

➢ **감사인의 책임 [기준 100. 4]**

감사인의 감사 수행 중 감사기준의 준수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어진 환경하에서 수행된 감사절차의 적절성
(2) 감사보고서가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절차의 결과에 근거했는지 여부

즉,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은 주어진 상황에서의 감사의견을 산출하기 위한 절차와 결과의 적절한 반영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며,
단순한 부정이나 오류의 발생이 감사인의 책임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100 총칙

2. 주요기준해설; 계속

➢ **감사기준의 적용 [기준 100. 4]**

감사인은 다양한 감사환경 하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지만 감사기준은 감사 업무와 관련한 모든 상황을 상황을 기준으로 제정할 수 없으므로 감사인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감사인은 감사에 관련되는 사항의 중요성과 감사위험에 대한 전문가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한 후 감사기준의 적용범위를 결정 하여야 한다.
▪ 회계감사기준은 감사업무수행의 기본원리이다.
▪ 예외적인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기준과는 다른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타당성을 조서화 하여야 한다.

200 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1. 목적

재무제표 감사의 일반원리, 감사의 범위 및 독립성에 대한 기본원리와 주요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다.

2. 주요기준해설: 감사의 일반원리, 감사범위, 독립성

➢ **감사의 일반원리 [기준 200. 2]**

감사는 회사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감사보고서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의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감사인이 준수하여야 할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

▪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 (윤리원칙)
감사인은 공인회계사 직업윤리 이외에도 제반 법규에서 정하는 윤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회계감사기준의 준수
감사인은 감사업무 수행시에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전문가적 의구심의 견지
감사인은 감사업무 수행 중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고 가정한 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200 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2. 주요기준해설 ; 계속

➢ **감사의 일반원리 [기준 200. 2]**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준수하여야 할 직업윤리는 다음과 같다.

▪ 독립성

감사계약의 체결부터 감사보고서의 발행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감사대상회사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을 말한다.

▪ 정직성

정신적 독립성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이며 동시에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기본윤리이다.

▪ 객관성

감사업무 수행 중 편견·선입관 등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단, 전문가적 의구심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의무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반 전문적 기준을 지속적으로 습득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중 정당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 비밀유지

감사업무 중 지득한 회사의 영업기밀 등에 대한 비밀유지를 하여야 한다.

▪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행

▪ 제반 전문적 기준의 습득과 준수

200 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2. 주요기준해설 ; 계속

➢ **감사범위 [기준 200. 3]**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의견표명을 하기 위하여 충분한 정도의 감사업무범위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사범위는 회계감사기준, 법규 및 감사조건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감사인이 결정하여야 한다.

200 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2. 주요기준해설: 계속

➢ **독립성**

▪ **의의**

독립성은 감사인의 표명한 감사의견의 사회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다.

▪ **정신적 독립성**

'정신적 독립성'은 감사인이 정직하고 객관적이며 전문가적 위구심을 가지고 행동함으로써 감사의견을 표명할 때 전문가로서의 판단을 훼손시키는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세를 말한다.

▪ **외관상 독립성**

'외관상 독립성'은 합리적이며 관련 지식이 있는 제3자가 감사인의 정직성과 객관성 및 전문가적 의구심이 훼손되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독립성이 훼손되는 상황이나 사실을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200 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2. 주요기준해설 ; 계속

➢ **정신적 독립성과 외관상 독립성의 관계**

▪ **정신적 독립상과 외관상 독립성의 상호보완**

감사보고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정신적 독립성과 외관상 독립성을 모두 유지하여야 한다.

▪ **정신적 독립상이 외관상 독립성보다 중요**

정신적 독립성은 전문가로서 불편·부당한 정신을 말하므로, 외관상 독립성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나, 객관적인 입증이 어렵다.

▪ **외관상 독립성은 감사보고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

외관상 독립성이 위배되면 외부정보이용자는 감사보고서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되므로, 정신적 독립성을 견지함과 동시에 외관상 독립성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을 기술하고 또 구체적으로 독립성이 훼손되는 인적, 재무적 관계와 구체적 활동을** 추가적으로 규정

200 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2. 주요기준해설 ; 계속

➢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나 업무유형 [기준 200. 4.2]**

감사업무의 사회적 성격상 감사와 관련한 감사대상회사와의 관계 및 업무를 고려하여보면 완전하게 독립성을 달성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회계감사기준에 독립성을 훼손하는 모든 상황이나 업무를 규정할 수는 없다. 감사인은 특정상황이나 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훼손시킬 가능성과 그 중요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독립성 훼손유형을 기준으로 공인회계사 유리규정의 독립성 위험별 관련 사례를 참조하여야 한다.

(1) 감사인과 회사간 이해관계가 상호 일치하거나 상충되는 경우
(2) 감사인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경우
(3) 회사의 경영자 또는 피고용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4)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200 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2. 주요기준해설 ; 계속

➢ **독립성 훼손가능성의 제거 또는 감소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기준 200. 4.3]**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독립성 위험이 훼손될 위험에 직면한 경우 그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방지 또는 제거하도록 적절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한다.
감사인의 제도적 안전장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의 전체구성원이 독립성을 준수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조직내부의 정책과 절차 등 독립성통제절차의 구축과 운영
(2) 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적절한 토의
(3) 독립성 유지정책을 담당하는 적절한 내부조직 또는 인력의 운영
(4) 기타 독립성의 훼손위험을 예방,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공인회계사윤리규정의 제도적 안전장치

200 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2. 주요기준해설 ; 계속

➢ **독립성 훼손가능성의 제거 또는 감소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직업윤리규정 제 17조 제 3항** (2003. 5. 20 개정)]

1. 공인회계사직업윤리에 관한 계속적인 연수
2. 감사인 자신의 질적 관리를 위한 조직의 설치 및 운영
3. 감사업무 품질관리방침과 절차의 수립
4. 상황별 이해상충위험의 인지, 평가, 해결방법 및 관련 증거의 문서화에 대한 방침과 절차의 수립
5. 독립성 훼손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속 공인회계사는 당해 감사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운영
6. 감사인이 특정한 의뢰인 및 기관에 대하여 감사업무와 비감사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게 되는 경우 독립성의 손상이 우려되는 감사업무에는 동일한 소속공인회계사가 상호중복하여 업무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마련
7. 감사인 조직내에 특정 의뢰인의 감사업무에 대한 책임자를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제도 운영
8. 인식된 독립성 훼손위험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장치나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업무의 수임을 거부하도록 하는 제도 운영
9. 감사인 조직내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별도의 임원급 공인회계사와 독립성에 관한 문제를 의논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 운영
10. 독립성 훼손문제를 의뢰인 조직내의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시기구, 이 회 및 제3자와 상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제도 운영

200 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2. 주요기준해설 ; 계속

➢ **독립성 상실**

- 판단: 감사인은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그 가능성을 수용가능한 수준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독립성 상실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응절차: 감사인이 시점별로 독립성 상실을 인식한 경우의 감사인의 조치는 다음과 같다.

인식시점	조 치
감사계약체결 전	감사계약의 체결 금지
감사계약체결 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계약 취소

200 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2. 주요기준해설 ; 계속

➢ **인적 독립성이 훼손되는 상황 [기준 200. 4.5.1]**

장기간의 감사, 재무적 이해관계, 고용관계 등은 감사인과 피감사인 간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

[장기간의 감사]
사실상의 동일한 감사인은 동일한 회사에 대하여 일정기간 연속하여 감사할 수 없으며 소속감사보조자를 주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재무적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 회계법인, 회계법인의 사원 및 당해 감사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상당금액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회사(업무관련 채권 채무는 제외)
무상으로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라고 공인회계사 사무소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
감사업무 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기타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자기회사의 주식, 신주인수권부 사채, 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회사

[인적특수관계]
회계법인의 사원 및 당해감사업무에 참여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 또는 사용인으로 있
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회사
과거 1년 이내에 자기의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행한 회계법인의 담당사원 또는 그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에 있는 회사

200 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2. 주요기준해설 ; 계속

➢ **수행이 금지된 비감사업무 [기준 200. 4.5.2]**

다음의 업무는 감사인이 제도적 안전장치의 운영여부와 무관하게 수행이 금지된 감사업무이다 .

[수행이 금지된 비감사업무]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3) 재무정보체계의 구축 또는 운영
(4) 피감사회사의 자산.자본. 그 밖의 권리 등(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기 위한 동 자산 등에 대한 실사. 재무보고. 가치평가 및 그 매도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

200 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2. 주요기준해설 ; 계속

➢ **회사 내부감사 등의 동의가 필요한 비감사업무 [기준 200. 4.5.3]**

감사인은 법규상 금지된 업무는 아니지만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고 그 영향이 중대한 일부 비감사업무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수행할 수 있다.

[비감사업무 수행의 충족 조건]

(1) 법규의 금지한 업무가 아닐 것

(2) 독립성위험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독립성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

(3) 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동의할 것

200 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2. 주요기준해설 ; 계속

➢ **회사 내부감사 등의 동의가 필요한 비감사업무 [기준 200. 4.5.3] ; 계속**

▪ 회사 내부감사 등의 동의가 필요한 비감사 업무

[감사 등의 동의가 필요한 비감사업무]
(1) 가치평가를 수반하는 기업구조조정 관련업무
(2) 인적자원의 조달 및 관리의 대행업무
(3) 자금조달 관련업무
(4) 투자자문업무
(5) 수행이 금지된 비감사업무 이외에 피감사 회사 이외의 제3자의 요청에 의하여 피감사 회사의 자산.자본. 그 밖의 권리 등(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하기 위한 동 자산 등에 대한 실사(실사결과 가치평가 업무를 수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무보고. 가치평가 및 그 매도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
(6)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다음의 업무
- 외감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내무회계관리제도의 설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검토.평가 또는 그 개선방안의 제시
- 제3의 용역자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구축과 관련된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내부통제 문제에 대하여 경영자 또는 제3의 용역자에게 권고 제공

200 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2. 주요기준해설 ; 계속

➢ **회사 내부감사 등의 협의가 필요한 비감사업무 [기준 200. 4.5.4]**

감사인은 세무조정 등의 업무가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내부감사 등과 협의를 거친 후 수행할 수 있다.

[비감사업무 수행의 충족 조건]

(1) 법규의 금지된 업무가 아닐 것

(2) 내부감사 등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업무가 아닐 것

(3) 독립성위험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독립성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

200 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2. 주요기준해설 ; 계속

➢ **관련문서의 보존 [기준 200. 4. 6]**

감사인은 독립성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문서를 감사조서로써 작성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이 필요한 문서]
(1) 제도적 안전장치에 따른 독립성준수 확인서
(2) 독립성 관련 내무조직의 업무수행 기록
(3) 비감사업무의 수행에 대한 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동의서 또는 협의기록

학습정리

1. 회계감사기준의 제정취지

회계감사기준은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를 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법률[“외감법’]에 근거하여 규정함으로써,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에 대한 책임의 구분 명확하기 하기 위함의 주요 목적이다.

2. 감사의 목적

감사는 감사대상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회사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3. 감사의 한계

감사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은 회사의 재무상태 또는 경영성과의 양호 여부를 평가하거나 장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4. 감사인의 책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은 주어진 상황에서의 감사의견을 산출하기 위한 절차와 결과의 적절한 반영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며,
단순한 부정이나 오류의 발생이 감사인의 책임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5. 감사의 일반원리

-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
- 회계감사기준의 준수
- 전문가적 의구심의 견지

학습정리

1. 독립성의 구분 [기준 200. 4.1]

▪ 정신적 독립성 : '정신적 독립성'은 감사인이 정직하고 객관적이며 전문가적 위구심을 가지고 행동함으로써 감사의견을 표명할 때 전문가로서의 판단을 훼손시키는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세를 말한다.
▪ 외관상 독립성 :'외관상 독립성'은 합리적이며 관련 지식이 있는 제3자가 감사인의 정직성과 객관성 및 전문가적 의구심이 훼손되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독립성이 훼손되는 상황이나 사실을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2.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나 업무유형 [기준 200. 4.2]

▪ 감사인과 회사간 이해관계가 상호 일치하거나 상충되는 경우
▪ 감사인이 자산이 한 일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경우
▪ 회사의 경영자 또는 피고용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3. 감사인은 독립성 훼손가능성의 제거 또는 감소를 위하여 제도적 안전장치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기준 200. 4.3]

4. 감사인은 독립성 상실을 인식한 시점별로 감사계약 체결의 금지 및 '의견거절' 감사보고서의 발행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기준 200..4.4]

5. 법규상 수행할 수 없는 비감사업무

▪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 재무정보체계의 구축 또는 운영
▪ 피감사회사의 자산.자본. 그 밖의 권리 등(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기 위한 동 자산 등에 대한 실사. 재무보고. 가치평가 및 그 매도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

학습정리 ; 계속

6. 감사의 동의가 필요한 비감사업무

▪가치평가를 수반하는 기업구조조정 관련업무
▪인적자원의 조달 및 관리의 대행업무
▪자금조달 관련업무
▪투자자문업무
▪수행이 금지된 비감사업무 이외에 피감사 회사 이외의 제3자의 요청에 의하여 피감사 회사의 자산.자본. 그 밖의 권리 등(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하기 위한 동 자산 등에 대한 실사(실사결과 가치평가 업무를 수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무보고. 가치평가 및 그 매도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다음의 업무
- 외감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내무회계관리제도의 설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검토.평가 또는 그 개선방안의 제시
- 제3의 용역자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구축과 관련된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내부통제 문제에 대하여 경영자 또는 제3의 용역자에게 권고 제공